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기재함)						
	사업자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구조피해자와의 관계						
대리인	성명			주소			
구조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업(근무처 명칭 및 소재지)						
	관할검찰청		00지방검찰청 (00지청)				
제1순위 유족	성명	구조피해자 와의 관계	주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기재합니다. 수령한 손해배상금액 : 원			
분할 지급 신청 여부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유 []무		※ ‘유’에 √ 표시한 경우 분할 지급 사유 및 희망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신청인 계좌번호		은행 :		계좌번호 :			
비고							

이	유	지
---	---	---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표자)

(서명)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처리 절차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심의]; C --> D[지급여부 결정]; D --> E[결정 및 통지];
```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rocess for reviewing criminal records. It consists of five sequential steps, each in a box, connected by right-pointing arrows. Below each box is the name of the responsible entity.

- 신청서 작성** (Application Form Filing) - 신청인 (Applicant)
- 접수** (Receipt) - 관할 지방검찰청 (Prosecutors' Office)
- 심의** (Review) -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Review Committee)
- 지급여부 결정** (Decision on Issuance) -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Review Committee)
- 결정 및 통지** (Decision and Notification) - 관할 지방검찰청 (Prosecutors' Office)

(뒤 쪽)

신청인 첨부서류	1.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가.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나.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표시표(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법무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구조금 지급업무 담당 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아래 √ 표시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상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4. 국세 납세증명서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6. 소득금액증명 ☐ 7.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 √ 표시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 범죄피해구조금의 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상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기본증명서(상세) ☐ 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대리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